

월 평 천 하 천 기 본 계 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
-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-

2023. 4.

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

1.1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개요

- 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, 14조」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을 공고·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

1.1.1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·공고

- 중앙일간지 : 서울신문
- 지방일간지 : 광주매일신문
- 정보통신망 : 전라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

1.1.2 주요 공람·공고 내용

- 공람기간 : 2023년 02월 22일 ~ 04월 04일(30일간,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
- 공람장소: 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각 시·군 하천관리부서
- 주민의견 제출기간 : 2023년 04월 11일까지 (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)
- 주민의견 제출장소 : 공람장소
- 주민의견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

1.1.3 주민설명회 개최

하천명	위 치	연 장 (km)	주민설명회			
			날 짜	시 간	장 소	참석인원
월평천	강진군 도암면~ 해남군 옥천면	5.96	2023. 03. 06.(수)	10:00	산정마을회관	12인

1.1.4 공고 · 공람관련자료

전라남도 공고 제2024-207호

지방하천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하천법」 제1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2. 22.

전라남도지사

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하천기본계획 수립(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)
- 계획하천 위치,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

하천명	위 치	연 장 (km)	주 민 설 명 회		
			날 짜	시 간	장 소
1 장성천	나주시 노안면	8.30	2024.03.07.(목)	10:00	노안면사무소
2 감정천	나주시 노안면	3.74			
3 삼천천	담양군 창평면	2.99	2024.03.08.(금)	10:00	창평면사무소
4 무동천	구례군 산동면	2.35	2024.03.07.(목)	14:00	산동면사무소
5 산정천	해남군 송지면	3.21	2024.03.05.(화)	14:00	송지면사무소
6 신평천	해남군 계곡면, 옥천면	1.10	2024.03.06.(수)	16:00	계곡면사무소
			2024.03.06.(수)	14:00	옥천면사무소
7 월평천	강진군 도암면, 해남군 옥천면	5.96	2024.03.06.(수)	14:00	옥천면사무소
			2024.03.06.(수)	10:00	산정마을회관

※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참석 불가, 주민설명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구 분	공람기간 및 장소
공 램 기 간	2024. 2. 22. ~ 2024. 4. 4.(30일) 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
공 램 장 소	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(읍·면사무소) *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
정 보 통 신 망	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3. 주민의견 제출

- 제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
- 제출방법 :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
- 제출기간 : 공람개시 후 ~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(☎061-286-3081) 또는 시·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고문

신문공고



전라남도 공고 제2024-207호
지방하천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하천법」 제1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전라남도지사

1. 계획의 개요
 ■ 계획명 : 하천기본계획 수립 (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)
 ■ 계획하천 위치,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

하천명	위치	연장 (km)	날짜	시간	장소
1 장성천	나주시 노안면	8.30	2024.03.07 (목)	10:00	노안면사무소
2 감정천	나주시 노안면	3.74	2024.03.07 (목)	14:00	노안면사무소
3 삼천천	담양군 창평면	2.99	2024.03.08 (금)	10:00	창평면사무소
4 무동천	구례군 산동면	2.35	2024.03.07 (목)	14:00	산동면사무소
5 산정천	해남군 송지면	3.21	2024.03.05 (화)	14:00	송지면사무소
6 신평천	해남군 개곡면, 옥천면	1.10	2024.03.06 (수)	14:00	옥천면사무소
7 월평천	강진군 도암면, 해남군 옥천면	5.96	2024.03.06 (수)	14:00	옥천면사무소

※ 발일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접촉 불가, 주민설명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구분	공람기간 및 장소
공람기간	2024. 2. 22 ~ 2024. 4. 4 (30일) 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
공람장소	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 (읍·면사무소) ※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
정보통신망	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(www.eass.go.kr)

3. 주민의견 제출
 ■ 제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
 ■ 제출방법 :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
 ■ 제출기간 : 공람개시 후 ~ 공람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
 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(☎061-286-3381) 또는 시·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라남도 공고 제2024-207호
지방하천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하천법」 제1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전라남도지사

1. 계획의 개요
 ■ 계획명 : 하천기본계획 수립 (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)
 ■ 계획하천 위치,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

하천명	위치	연장 (km)	날짜	시간	장소
1 장성천	나주시 노안면	8.30	2024.03.07 (목)	10:00	노안면사무소
2 감정천	나주시 노안면	3.74	2024.03.07 (목)	14:00	노안면사무소
3 삼천천	담양군 창평면	2.99	2024.03.08 (금)	10:00	창평면사무소
4 무동천	구례군 산동면	2.35	2024.03.07 (목)	14:00	산동면사무소
5 산정천	해남군 송지면	3.21	2024.03.05 (화)	14:00	송지면사무소
6 신평천	해남군 개곡면, 옥천면	1.10	2024.03.06 (수)	14:00	옥천면사무소
7 월평천	강진군 도암면, 해남군 옥천면	5.96	2024.03.06 (수)	14:00	옥천면사무소

※ 발일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접촉 불가, 주민설명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구분	공람기간 및 장소
공람기간	2024. 2. 22 ~ 2024. 4. 4 (30일) 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
공람장소	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 (읍·면사무소) ※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
정보통신망	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(www.eass.go.kr)

3. 주민의견 제출
 ■ 제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
 ■ 제출방법 :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
 ■ 제출기간 : 공람개시 후 ~ 공람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
 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(☎061-286-3381) 또는 시·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중앙일간지(서울신문)

지역일간지(광주매일신문)

주민설명회 참석 사진 및 참석자 명부(월평천)



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

성명	연락처
김영민	010-9900-1234
이정현	010-9900-5678
박준호	010-9900-9012
최민서	010-9900-3456
한지우	010-9900-7890
정재민	010-9900-2345
김민준	010-9900-6789
이현우	010-9900-0123
박지민	010-9900-4567
최지우	010-9900-8901
한지우	010-9900-2345
정재민	010-9900-6789
김민준	010-9900-0123
이현우	010-9900-4567
박지민	010-9900-8901
최지우	010-9900-2345
한지우	010-9900-6789
정재민	010-9900-0123
김민준	010-9900-4567
이현우	010-9900-8901
박지민	010-9900-2345
최지우	010-9900-6789
한지우	010-9900-0123
정재민	010-9900-4567
김민준	010-9900-8901
이현우	010-9900-2345
박지민	010-9900-6789
최지우	010-9900-0123
한지우	010-9900-4567
정재민	010-9900-8901
김민준	010-9900-2345
이현우	010-9900-6789
박지민	010-9900-0123
최지우	010-9900-4567
한지우	010-9900-8901
정재민	010-9900-2345
김민준	010-9900-6789
이현우	010-9900-0123
박지민	010-9900-4567
최지우	010-9900-8901
한지우	010-9900-2345
정재민	010-9900-6789
김민준	010-9900-0123
이현우	010-9900-4567
박지민	010-9900-8901
최지우	010-9900-2345
한지우	010-9900-6789
정재민	010-9900-0123
김민준	010-9900-4567
이현우	010-9900-8901
박지민	010-9900-2345
최지우	010-9900-6789
한지우	010-9900-0123
정재민	010-9900-4567
김민준	010-9900-8901
이현우	010-9900-2345
박지민	010-9900-6789
최지우	010-9900-0123
한지우	010-9900-4567
정재민	010-9900-8901
김민준	010-9900-2345
이현우	010-9900-6789
박지민	010-9900-0123
최지우	010-9900-4567
한지우	010-9900-8901
정재민	010-9900-2345
김민준	010-9900-6789
이현우	010-9900-0123
박지민	010-9900-4567
최지우	010-9900-8901
한지우	010-9900-2345
정재민	010-9900-6789
김민준	010-9900-0123
이현우	010-9900-4567
박지민	010-9900-8901
최지우	010-9900-2345
한지우	010-9900-6789
정재민	010-9900-0123
김민준	010-9900-4567
이현우	010-9900-8901
박지민	010-9900-2345
최지우	010-9900-6789
한지우	010-9900-0123
정재민	010-9900-4567
김민준	010-9900-8901
이현우	010-9900-2345
박지민	010-9900-6789
최지우	010-9900-0123
한지우	010-9900-4567
정재민	010-9900-8901
김민준	010-9900-2345
이현우	010-9900-6789
박지민	010-9900-0123
최지우	010-9900-4567
한지우	010-9900-8901
정재민	010-9900-2345
김민준	010-9900-6789
이현우	010-9900-0123
박지민	010-9900-4567
최지우	010-9900-8901
한지우	010-9900-2345
정재민	010-9900-6789
김민준	010-9900-0123
이현우	010-9900-4567
박지민	010-9900-8901
최지우	010-9900-2345
한지우	010-9900-6789
정재민	010-9900-0123
김민준	010-9900-4567
이현우	010-9900-8901
박지민	010-9900-2345
최지우	010-9900-6789
한지우	010-9900-0123
정재민	010-9900-4567
김민준	010-9900-8901
이현우	010-9900-2345
박지민	010-9900-6789
최지우	010-9900-0123
한지우	010-9900-4567
정재민	010-9900-8901
김민준	010-9900-2345
이현우	010-9900-6789
박지민	010-9900-0123
최지우	010-9900-4567
한지우	010-9900-8901
정재민	010-9900-2345
김민준	010-9900-6789
이현우	010-9900-0123
박지민	010-9900-4567
최지우	010-9900-8901
한지우	010-9900-2345
정재민	010-9900-6789
김민준	010-9900-0123
이현우	010-9900-4567
박지민	010-9900-8901
최지우	010-9900-2345
한지우	010-9900-6789
정재민	010-9900-0123
김민준	010-9900-4567
이현우	010-9900-8901
박지민	010-9900-2345
최지우	010-9900-6789
한지우	010-9900-0123
정재민	010-9900-4567
김민준	010-9900-8901
이현우	010-9900-2345
박지민	010-9900-6789
최지우	010-9900-0123
한지우	010-9900-4567
정재민	010-9900-8901
김민준	010-9900-2345
이현우	010-9900-6789
박지민	010-9900-0123
최지우	010-9900-4567
한지우	010-9900-8901
정재민	010-9900-2345
김민준	010-9900-6789
이현우	010-9900-0123
박지민	010-9900-4567
최지우	010-9900-8901
한지우	010-9900-2345
정재민	010-9900-6789
김민준	010-9900-0123
이현우	010-9900-4567
박지민	010-9900-8901
최지우	010-9900-2345
한지우	010-9900-6789
정재민	010-9900-0123
김민준	010-9900-4567
이현우	010-9900-8901
박지민	010-9900-2345
최지우	010-9900-6789
한지우	010-9900-0123
정재민	010-9900-4567
김민준	010-9900-8901
이현우	010-9900-2345
박지민	010-9900-6789
최지우	010-9900-0123
한지우	010-9900-4567
정재민	010-9900-8901
김민준	010-9900-2345
이현우	010-9900-6789
박지민	010-9900-0123
최지우	010-9900-4567
한지우	010-9900-8901
정재민	010-9900-2345
김민준	010-9900-6789
이현우	010-9900-0123
박지민	010-9900-4567
최지우	010-9900-8901
한지우	010-9900-2345
정재민	010-9900-6789
김민준	010-9900-0123
이현우	010-9900-4567
박지민	010-9900-8901
최지우	010-9900-2345
한지우	010-9900-6789
정재민	010-9900-0123
김민준	010-9900-4567
이현우	010-9900-8901
박지민	010-9900-2345
최지우	010-9900-6789
한지우	010-9900-0123
정재민	010-9900-4567
김민준	010-9900-8901
이현우	010-9900-2345
박지민	010-9900-6789
최지우	010-9900-0123
한지우	010-9900-4567
정재민	010-9900-8901
김민준	010-9900-2345
이현우	010-9900-6789
박지민	010-9900-0123
최지우	010-9900-4567
한지우	010-9900-8901
정재민	010-9900-2345
김민준	010-9900-6789
이현우	010-9900-0123
박지민	010-9900-4567
최지우	010-9900-8901
한지우	010-9900-2345
정재민	010-9900-6789
김민준	010-9900-0123
이현우	010-9900-4567
박지민	010-9900-8901
최지우	010-9900-2345
한지우	010-9900-6789
정재민	010-9900-0123
김민준	010-9900-4567
이현우	010-9900-8901
박지민	010-9900-2345
최지우	010-9900-6789
한지우	010-9900-0123
정재민	010-9900-4567
김민준	010-9900-8901
이현우	010-9900-2345
박지민	010-9900-6789
최지우	010-9900-0123
한지우	010-9900-4567
정재민	010-9900-8901
김민준	010-9900-2345
이현우	010-9900-6789
박지민	010-9900-0123
최지우	010-9900-4567
한지우	010-9900-8901
정재민	010-9900-2345
김민준	010-9900-6789
이현우	010-9900-0123
박지민	010-9900-4567
최지우	010-9900-8901
한지우	010-9900-2345
정재민	010-9900-6789
김민준	010-9900-0123
이현우	010-9900-4567
박지민	010-9900-8901
최지우	010-9900-2345
한지우	010-9900-6789
정재민	010-9900-0123
김민준	010-9900-4567
이현우	010-9900-8901
박지민	010-9900-2345
최지우	010-9900-6789
한지우	010-9900-0123
정재민	010-9900-4567
김민준	010-9900-8901
이현우	010

1.1.5 공고 · 공람 결과

<p>[붙임]</p> <p>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</p> <p>【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】</p> <p>○ 주요 계획 내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하천명</th> <th rowspan="2">연장(km)</th> <th colspan="4">계획내용</th> <th rowspan="2">교량</th> </tr> <tr> <th>제방 및 호안</th> <th colspan="2">방안시설물</th> <th>교량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</th> <th>축제</th> <th>보축</th> <th>고호</th> <th>보</th> <th>낙차공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장성천</td> <td>8.16</td> <td>7,281m</td> <td>7,621m</td> <td>-</td> <td>재가설(1개소)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감정천</td> <td>3.6</td> <td>4,541m</td> <td>835m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재가설(10개소)</td> </tr> <tr> <td>삼천천</td> <td>2.97</td> <td>2,752m</td> <td>743m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재가설(6개소)</td> </tr> <tr> <td>무동천</td> <td>2.35</td> <td>1,002m</td> <td>388m</td> <td>-</td> <td>재가설(7개소)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산정천</td> <td>3.21</td> <td>4,428m</td> <td>1,605m</td> <td>-</td> <td>재가설(1개소)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월평천</td> <td>5.94</td> <td>6,139m</td> <td>2,805m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재가설(4개소)</td> </tr> <tr> <td>신평천</td> <td>1.26</td> <td>1,669m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재가설(2개소)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협의근거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제12조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</p> <p>○ 계획수립자 / 승인기관 : 전라남도지사 / 전라남도</p> <p>I. 총괄</p> <p>○ 동 계획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7개의 지방하천*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검토의견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장성천(나주시), 감정천(나주시), 삼천천(담양군), 무동천(구례군), 산정천(해남군), 월평천(강진군·해남군), 신평천(해남군) <p>○ 하천기본계획은 상위·관련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,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·제시 	하천명	연장(km)	계획내용				교량	제방 및 호안	방안시설물		교량			축제	보축	고호	보	낙차공	장성천	8.16	7,281m	7,621m	-	재가설(1개소)	-	감정천	3.6	4,541m	835m	-	-	재가설(10개소)	삼천천	2.97	2,752m	743m	-	-	재가설(6개소)	무동천	2.35	1,002m	388m	-	재가설(7개소)	-	산정천	3.21	4,428m	1,605m	-	재가설(1개소)	-	월평천	5.94	6,139m	2,805m	-	-	재가설(4개소)	신평천	1.26	1,669m	-	-	재가설(2개소)	-	<p>○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에 충실히 반영·작성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안 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, 초안 대비 변경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총괄표(시설물계획별 합계를 포함) 작성과 함께 변경 사유를 제시 <p>II. 항목별 검토의견</p> <p>가. 계획의 적정성</p> <p>○ 동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·관련계획과의 부합·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수해·제해이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·제시하고, 급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 -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(포함되는지 여부)를 제시하고,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급회 시설물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·제시 <p>○ 일률적·획일적 설계기준(홍수량)을 적용하기보다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(하천제해위험지구, 상습침수지역 등)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, 침수범위, 개수율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(가옥, 농경지, 도로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-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·제시
하천명			연장(km)	계획내용				교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방 및 호안	방안시설물		교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축제	보축	고호	보	낙차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성천	8.16	7,281m	7,621m	-	재가설(1개소)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정천	3.6	4,541m	835m	-	-	재가설(10개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삼천천	2.97	2,752m	743m	-	-	재가설(6개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동천	2.35	1,002m	388m	-	재가설(7개소)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정천	3.21	4,428m	1,605m	-	재가설(1개소)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월평천	5.94	6,139m	2,805m	-	-	재가설(4개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평천	1.26	1,669m	-	-	재가설(2개소)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○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횡적구조물(교량, 보·낙차공)은 존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철거하고, 존치 또는 재가설·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, 설치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,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·제시 - 횡적구조물의 철거는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계획홍수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제시 - 어도 설치 계획을 제시한바,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전면 월류식 자연형 어도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,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형 어도 설치를 계획 <p>나. 입지의 타당성</p> <p>1) 자연환경의 보전</p> <p>□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</p> <p>○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* 등을 명기하고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하천구역은 수변식생 원형보전, 보·낙차공 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, 상수원보호구역, 야생동식물 보호지역, 습지보호지역, 문화재보호구역 등 <p>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최근에 고시된 생태·자연도를 적용하고 계획하천 내 생태·자연도 1등급 구간의 지정 사유를 제시</p> <p>- (장성천, 감정천, 산정천, 월평천) 하천 내 생태·자연도 1등급지 및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고 축제가 불가피할 시 축제 및 보축 등 수단·방법 대안에 대한 장·단점(필요성·환경영향)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 후 구체적으로 제시*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비교·분석 	<p>○ 문헌·현지조사 결과, 사업구역과 주변에서 법정보호종(삿, 수달, 황조롱이, 격지기 등)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,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 수달, 삿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,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을 300~500m 단위로 구분한 후,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 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 <p>○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,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 - 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,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 <p>○ 동 계획 하천 중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해양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산정천) 남해로 합류하는 하천이므로 해양 동·식물상 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 수립·제시 <p>○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·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사업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바, 확폭 구간을 도면이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 -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원경시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,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축하는 등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기관 검토의견 : 영산강유역환경청

<p>- 하천 내 어류, 호름, 쉼의 반복적 구매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 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 강구</p> <p>○ 하천에 적용 예정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,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</p> <p>- 식생의 도입을 저해(자연석, 석축 쌓기 등)하고,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</p> <p>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</p> <p>○ 사업 시행 전·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(원경, 중경, 근경)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,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·제시하여야 함</p> <p>* 축제 및 교량 제거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 제시</p> <p>□ 수환경의 보전</p> <p>○ 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*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p>* 수질측정 결과, 하류수계 영향 여부,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</p> <p>- 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·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</p> <p>-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 예측을 위해 하천별 상류, 중류, 하류 지점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수질조사(하천 저질 포함)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</p> <p>○ 하폭 확장 및 하도 정비로 인한 건천화·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하고 기존 하천 횡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또는 보축하는 대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</p>	<p>- 축제 및 보축 등 제방계획이 수립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개요, 토지이용 현황, 특징(현황사전 포함), 평면도 및 횡단면도 제시</p> <p>- (무동천) 상대적으로 하폭이 넓은 구간(No.0+350)이 있으므로 하폭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시</p> <p>○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,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'나쁨' 단계 이하인 경우,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p>* 하천·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(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, '15.11.16) 참고</p> <p>2) 생활환경의 안전성</p> <p>□ 환경기준 부합성</p> <p>○ 하천정비 시 대기질, 소음·진동에 의한 주변 정은시설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p>- 대기질 조사 시 조사범위는 계획하천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</p> <p>□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</p> <p>○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시,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·배출, 운반·수집·보관·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p>○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,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</p> <p>*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23-72호, 2023. 4. 13.),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(환경부, 2015. 12. 9.) 등 참조</p>
<p>-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중 N₂O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는 고정배출원 0.6kg/TJ를 적용하였으나, 사업지구 내에서 절성토 및 운반 등을 위해 건설장비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므로, N₂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이동배출원 2kg/TJ 적용하여 재산정·제시</p> <p>3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</p> <p>□ 환경친화적 토지이용</p> <p>○ 계획 하천의 현재·장래의 이용·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, 공간관리 계획(보전, 복원, 친수지구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p>- 위성사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,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(현장 사진·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, 계획 등)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</p> <p>-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, 원형 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</p> <p>-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</p>	<p>III. 기타사항</p> <p>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[별표1]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·제시하여야 함</p> <p>○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,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</p> <p>- 문헌자료(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, 생태·자연도 등)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</p> <p>-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, 현지조사표(동물상 포함)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(부록에 첨부)</p> <p>-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, 예측적용 방법, 예측 시 사용계획,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</p> <p>-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,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</p> <p>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, 주민 등의 의견 수립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(라 기관 및 주민의견 수립 구분)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·제시하여야 함</p> <p>-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,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</p> <p>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·직책·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끝.</p>

관계기관 검토의견 : 영산강유역환경청

- 해남-강진 울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 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 의견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강진군 도암면 ~ 해남군 옥천면 주변
- 규모 : 5.94km
- 시행기관 : 전라남도
- 승인기관 : 전라남도

□ 검토의견

- 본 검토의견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관할하는 도지사”와 관련된 **도 환경부서의 검토 의견**임.
- 본 평가서는 하천의 관리, 이용, 보전, 개발 등 체계적인 조사·분석을 통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됨.
-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·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-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하천구역 내 일부 포함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보존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.
- 계획하천의 동·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공사시 법적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포획 및 남획방지,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.

- 교량, 보, 배수시설물 등은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, 수생태계를 보전·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- 향후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 추진 시
 - 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, 가배수로,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.
 - 공사시 기계·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·수질 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,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 - 공사 시 작업 인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
 -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임목폐기물, 공사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.
 - 장비의 가동, 작업차량 진·출입,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(살수, 세륜시설 등)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.
 - 대기질과 소음·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,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·이행하여야 함.
 -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.
-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.
-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·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함.

-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.
-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·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함.
-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. 끝.

관계기관 검토의견 : 전라남도 기후생태과

장성천 등 7개(월평천) 하천기본계획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

□ 검토의견

- 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천의 이·치수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- 사업 시행 시 하천수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,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변에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등을 시행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강구하여야 함.
- 공사 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, 서식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이동통로의 확보 및 단계적 공사 계획 수립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특히 현장조사에서 관찰된 범정보호종 샛, 수달, 참매로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.
- 본 공사 시행 중 근로자 및 장비투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폐유,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
- 공사 시 비산먼지, 소음·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서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
-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

□ 기타

-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.

관계기관 검토의견 : 강진군

1.1.5.1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결과

의견제출자	질의내용	답변내용	비고
주민1	▶ 기존 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?	▶ 금회 개수계획으로 인해 하폭이 확장되며 보 및 낙차공의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	
주민2	▶ 해월천과 한치천의 물이 한꺼번에 몰려서 넘치게 됩니다.	▶ 해당구간은 월평천 상류부와 한치천이 같이 합류하는 구간으로 상류부 확폭을 통하여 치수적으로 안정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.	
주민3	▶ 물이 안 빠지고, 월평천이 이전에 포크레인 공사를 진행한 적 있는데 의미가 없었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?	▶ 과업구간 중 하상퇴적이 빈번한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강진군에 건의하겠습니다.	
주민4	▶ 월평천 하도내 배수파이프가 매립되어있는데 이번 공사에서 저축이 되나요?	▶ 금회 월평천 개수계획은 확폭을 통한 축제계획이 수립되었고 별도의 하도준설은 수립하지않았습니다. 따라서 금회 계획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저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	
주민5	▶ 비가 오면 메인~합류지역인 옥천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월평천만 보완을 해도 되는건지, 같이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?	▶ 금회 사업 대상구간은 월평천에 해당하며 옥천천은 2003년 수립되었습니다.	
주민6	▶ 아래쪽 옥천천은 가동보로 해서 물이 잘 떨어지는데, 월평천의 경우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기에 폭을 더 넓혀야 하며 가동보로 설치해주시시오.	▶ 금회 월평천은 현하폭 44~89m로 계획홍수량 대비 통수단면적이 부족하여 계획하폭 80~90m의 확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 더불어, 가동보 적용시 수위영향을 검토하겠습니다.	
주민7	▶ 물이 갈 곳이 없어 침수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?	▶ 추후 수위영향 및 가동보 부분 검토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	
주민8	▶ 월평 2교 재가설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이미 앞 전 공사에서 너무 높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낮다고 보고 지금보다 더 높이는 건지, 애초에 지금 현재 높이만큼 물이 찬 적도 없습니다. 그리고 폭이 좁아서 자동차가 교차해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.	▶ 금회 하천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교량은 여유고 부족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천설계기준에 근거하여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 해당 교량의 교폭은 향후 실시설계시 교통량, 교량사용빈도 등을 통해 현황에 맞는 교량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.	
주민9	▶ 월평천 종자보-구종자보 사이 하천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?	▶ 종자보 - 구종자보 구간 좌안은 하천관리용 도로가 단절되었으므로,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독마루폭 확보 및 제방도로 포장을 계획하겠습니다.	

1.1.5.2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

가. 전라남도 기후생태과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검 토 의 견	○본 검토의견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관할하는 도지사”와 관련된 道 환경부서의 검토 의견임.	-	
	○본 평가서는 하천의 관리, 이용, 보전, 개발 등 체계적인 조사·분석을 통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됨.	-	
	○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·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	○본 보고서 작성시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·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겠음	
	○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하천구역 내 일부 포함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보존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.	○계획하천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으며, 계획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,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	
	○계획하천의 동·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포획 및 남획방지,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.	○계획하천의 동·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 방안을 수립·이행 하겠으며,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포획 및 남획방지,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 공사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	
	○교량, 보, 배수시설물 등은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, 수생태계를 보전·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	○교량, 보 배수시설물 등은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생태계를 보전·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	
	○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, 가배수로,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.	○공사 및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사지, 가배수로,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검 토 의 견	○ 공사시 기계·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·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,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	○ 공사 및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사지, 가배수로, 오탉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	
	○ 공사 시 작업 인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	○ 공사시 기계·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·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, 유출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제시하겠음	
	○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임목폐기물,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.	○ 공사 시 작업 인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	
	○ 장비의 가동, 작업차량 진·출입,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(살수, 세륜시설 등)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.	○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임목폐기물, 공사장비의 폐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음	
	○ 대기질과 소음·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,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·이행하여야 함.	○ 장비의 가동, 작업차량 진·출입, 야적 등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 정온시설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세륜·세차시설, 살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토록 하겠음	
	○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.	○ 대기질과 소음·진동은 본 보고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토록 하겠음	
	○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.	○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, 별도의 저감방안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토록 하겠음	
	○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·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함.	○ 계획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중립방안을 수립·제시하겠음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토록 하겠음 	

나. 영산강유역환경청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총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 계획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7개의 지방하천*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검토의견임 * 장성천(나주시), 감정천(나주시), 삼천천(담양군), 무동천(구례군), 산정천(해남군), 월평천(강진군·해남군), 신평천(해남군) 	-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천기본계획은 상위·관련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,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- 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·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 계획 수립 시 상위·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음 - 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·제시하였음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에 충실히 반영·작성하여야 함 - 본안 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, 초안 대비 변경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총괄표(시설물계획별 합계를 포함) 작성과 함께 변경 사유를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 계획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본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음 - 본안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, 초안 대비 변경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총괄표(시설물계획별 합계 포함) 작성과 함께 변경 사유를 제시하겠음 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계획 의 적정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·관련 계획과의 부합·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수해·재해이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·관련 계획과의 부합·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, 수해·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겠습니다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·제시하고, 금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,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·제시하였으며, 금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,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회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·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도록 하겠으며,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회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·제시하겠습니다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률적·획일적 설계기준(홍수량)을 적용하기보다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(하천재해위험지구, 상습침수지역 등)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률적·획일적 설계기준(홍수량)을 적용하기 보다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천재해위험지구, 상습침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, 침수범위, 개수율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(가옥, 농경지, 도로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, 침수범위, 개수율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(가옥, 농경지, 도로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·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,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겠습니다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횡적구조물(교량, 보·낙차공)은 준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철거하고, 준치 또는 재가설·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, 설치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교량, 보·낙차공 등의 횡적구조물은 준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가설, 준치 또는 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,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계획 의 적정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,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·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,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,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겠음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횡적구조물의 철거는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계획홍수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횡적구조물의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계획홍수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제시하겠음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도 설치 계획을 제시한바,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전면 월류식 자연형 여울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,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형 어도 설치를 계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득이하게 어도를 설치할 경우 전면 월류식 자연형 여울 설치를 우선 검토하겠으며,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형 어도 설치를 계획하겠음 	
생물 다양 성 · 서식 지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* 등을 명기하고 일부 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하천 구역은 수변식생 원형보전, 보·낙차공 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 *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, 상수원보호구역, 야생동식물 보호지역, 습지보호지역, 문화재보호구역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, 상수원보호구역, 야생동식물 보호지역, 습지보호지역,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구역을 명기하고, 일부 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구역은 수변식생 원형보전, 보·낙차공 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겠음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최근에 고시된 생태·자연도를 적용하고 계획하천 내 생태·자연도 1등급 구간의 지정 사유를 제시 - (장성천, 감정천, 산정천, 월평천) 하천 내 생태·자연도 1등급지 및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고 축제가 불가피할 시 축제 및 보축 등 수단·방법 대안에 대한 장·단점(필요성·환경영향)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 후 구체적으로 제시* *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비교·분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최근에 고시된 생태·자연도를 적용하였으며, 계획하천 내 생태·자연도 1등급 구간의 지정 사유를 제시하겠음 - 월평천 내 생태·자연도 1등급지 및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겠으며, 축제가 불가피할 경우 축제 및 보축 등의 수단·방법 대안에 대한 장·단점(필요성·환경영향)을 비교 분석하여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구체적으로 비교·분석하겠음 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생물 다양 성 · 서식 지 보전	○ 문헌·현지조사 결과, 사업구역과 주변에서 법정보호종(삿, 수달, 황조롱이, 꺾저기 등)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,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문헌 및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법정보호종(삿, 수달, 황조롱이, 꺾저기 등)에 대해 추후 계획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·제시하겠음	
	-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 수달, 삿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,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을 300~500m 단위로 구분한 후,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	-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인 수달, 삿의 서식이 확인된 바, 서식환경을 보고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후 계획시행 시 공사구간을 300~500m로 구분한 후,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음	
	○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○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은 검토·제시하겠음	
	- 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,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	- 공사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,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·검토하겠음	
	- 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 필요한 경우,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	- 교량 공사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,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토록 하겠음	
	○ 동 계획 하천 중 해양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해양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-	
	- (산정천) 남해로 합류하는 하천이므로 해양 동·식물상 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 수립·제시	-	
	○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·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	○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·회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생물 다양 성 · 서식 지 보전	- 동 사업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바,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	- 본 계획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겠습니다	
	-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환경사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,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충하는 등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	-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환경사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,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충하는 등 식생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	
	- 하천 내 여울, 흐름, 썩의 반복적 구매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 강구	- 하천 내 여울, 흐름, 썩의 반복적 구매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	
	○ 하천에 적용 예정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,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	○ 하천에 적용 예정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으며,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겠습니다	
	- 식생의 도입을 저해(자연석, 석축 쌓기 등)하고,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	- 식생의 도입을 저해(자연석, 석축쌓기 등)하고, 홍수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	
주변 자연 경관 에 미치 는 영향	○ 사업 시행 전·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(원경, 중경, 근경)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,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·제시하여야 함 ※ 축제 및 교량 재가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·제시	○ 계획 시행 전·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(원경, 중경, 근경)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, 계획 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·제시하겠습니다 ※ 축제 및 교량 재가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·제시하겠습니다	
수환 경의 보전	○ 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*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 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 * 수질측정 결과, 하류수계 영향 여부,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	○ 계획하천의 수질측정결과, 하류수계 영향여부,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 하천의 특성 및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 수질목표기준을 설정하였으며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겠습니다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수환 경의 보전	- 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·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	- 계획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·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토록 하겠음	
	-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 예측을 위해 하천별 상류, 중류, 하류 지점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수질조사(하천 저질 포함)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	-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예측을 위해 1회 이상의 수질조사(하천 저질 포함)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토록 하겠음	
	○ 하폭 확장 및 하도 정비로 인한 건천화·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하고 기존 하천 횡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또는 보축하는 대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○ 하폭 확장 및 하도 정비로 인한 건천화·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토록 하겠으며, 기존 하천 횡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또는 보축하는 대안을 검토·제시하겠음	
	- 축제 및 보축 등 제방계획이 수립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개요, 토지이용 현황, 특징(현황사진 포함), 평면도 및 횡단면도 제시	- 축제 및 보축 등 제방계획이 수립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개요, 토지이용 현황, 특징(현황사진 포함), 평면도 및 횡단면도를 제시하겠음	
	- (무동천) 상대적으로 하폭이 넓은 구간(No.0+350)이 있으므로 하폭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시	-	
	○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 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,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‘나쁨’ 단계 이하인 경우,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* 하천·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(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, ‘15.11.16) 참고	○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 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,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‘나쁨’ 단계 이하인 경우,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	
환경 기준 부합 성	○ 하천정비 시 대기질, 소음·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하천정비 시 대기질, 소음·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겠음	
	- 대기질 조사 시 조사범위는 계획하천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	- 대기질 조사 시 조사범위는 계획하천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겠음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자원 ·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시,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·배출, 운반·수집·보관·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후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시,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·배출, 운반·수집·보관·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,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※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(환경부고시 제2023-72호, 2023. 4. 13.),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(환경부, 2015. 12. 9.) 등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후 계획시행시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,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토록 하겠음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중 N₂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고정배출원 0.6kg/TJ를 적용하였으나, 사업지구 내에서 절성토 및 운반 등을 위해 건설장비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므로, N₂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이동배출원 2kg/TJ 적용하여 재산정·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N₂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고정배출원 0.6kg/TJ를 적용하였으나, 계획하천 내 절성토 및 운반 등을 위해 건설장비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므로, N₂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이동배출원 2kg/TJ 적용하여 재산정·제시하겠음 	
환경 친화 적 토지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 하천의 현재·장래의 이용·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, 공간관리 계획(보전, 복원, 친수지구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하천의 현재·장래의 이용·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, 보전, 복원, 친수지구 등의 공간관리 계획을 수립·제시 하겠음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성사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,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(현장 사진·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, 계획 등)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 -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, 원형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성사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,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(현장 사진·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, 계획 등)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하겠음 -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, 원형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환경 친화 적 토지 이용	-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	-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겠음	
기타 사항	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[별표1]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·제시하여야 함	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으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[별표1]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·제시하겠음	
	○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,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	○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으며, 최대한 정량화하도록 하겠음	
	- 문헌자료(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, 생태·자연도 등)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	- 문헌자료(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, 생태·자연도 등)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제시하겠음	
	-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, 현지조사표(동물상 포함)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(부록에 첨부)	-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, 현지조사표(동물상 포함)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(부록에 첨부)하겠음	
	-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, 예측 적용 방법, 예측 시 사용계획,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	-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, 예측 적용 방법, 예측 시 사용계획,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겠음	
	-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,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	-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,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를 제시하겠음	
	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,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(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)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·제시하여야 함	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,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(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)하겠으며,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·제시하겠음	
	-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,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	-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,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음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기타 사항	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·직책·성명을 제시하여야 함	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·직책·성명을 제시하겠음	

다. 강진군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검토 의견	○ 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천의 이·치수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하천기본계획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	○ 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천의 이·치수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하천기본계획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	
	○ 사업 시행 시 하천수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,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변에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등을 시행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강구하여야 함.	○ 계획시행 시 하천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,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변에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등을 시행하여 토사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	
	○ 공사 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, 서식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이동통로의 확보 및 단계적 공사 계획 수립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특히 현장조사에서 관찰된 법정보호종 삼, 수달, 참매로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.	○ 공사 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, 서식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이동통로의 확보 및 단계적 공사 계획 수립 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수립하겠으며, 특히 현장조사에서 관찰된 법정보호종 삼, 수달, 참매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추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	
	○ 본 공사 시행 중 근로자 및 장비투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폐유,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	○ 공사 시행 시 근로자 및 장비투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폐유,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겠음	

항목	의견요지	반영여부 (미반영사유)	비고
검토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 시 비산먼지, 소음·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서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 시 비산먼지, 소음·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 정온시설에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음 	